

신용평가 약정서(파생결합사채용)

의뢰인(이하 “갑”)은 “갑”이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한 신용평가를 평가인(이하 “을”)에게 의뢰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후면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파생결합사채>

- 평가종류 : 채권 본평가 () 채권 예비평가 ()
- 약정종류(채권평가지) : 채권별약정 () 연간단위약정 ()
- 평가방식(연간약정시) : 채권별평가 () 일괄평가 ()
- 채권의 명칭 : 제 _____ 회 _____ 채권
- 발행금액(예정) : _____ 원
- 미공시 및 사후평가 여부: 미공시 () 미공시평가 시 사후평가 ()
- 본평가수수료 : 금 _____ 만원 정(₩ _____) <부가가치세 별도>
- 정기평가수수료 : 금 _____ 만원 정(₩ _____) <부가가치세 별도>
- 연간단위 약정의 유효기간 :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
- 기타특약 : _____

<파생결합사채(ELB/DLB) 신용평가수수료 적용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만 원 미만 절사)>

구 분		수수료	
본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연간)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수수료
		1천억원 이하	1,100만 원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1,300만 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600만 원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2,200만 원
	2조 원 초과	3,300만 원	
	발행수수료 (연간)	연간 파생결합사채 발행액	수수료
		1조원 이하	2,000만 원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3,000만 원
		2조원 초과 ~ 3조원 이하	4,000만 원
		3조 원 초과	5,000만 원
정기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함	

- 기본수수료는 약정기간내 채권(예비평가 포함) 또는 기업신용평가 본평가지 면제함.
- 정기평가수수료는 약정기간내 채권(예비평가 포함) 또는 기업신용평가 본평가지 면제함.
- 연간단위약정 체결시 상기 평가수수료는 년 2회(6월, 12월) 분납을 원칙으로 함. 단, 평가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의뢰인(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가인(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상 호 :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대표자 : 안 영 복



신용평가 약정사항 (파생결합사채용)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본 약정은 의뢰인(이하 "갑")이 NICE신용평가(주)(이하 "을")에게 "갑"이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약정에서의 신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의 정도에 대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호로 표시한 의견을 말한다.

제2조 (신용평가의 구분) ① 신용평가는 본 약정서의 약정 체결 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본평가", "예비평가")와 최초 평가 이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평가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사후평가("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성된다.

② "본평가"라 함은 채무증권의 만기상환가능성 또는 "갑"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본 약정서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말한다.

③ "예비평가"라 함은 발행조건이 미확정된 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시되지 아니한다. "예비평가" 후 실제 회사채 발행 시 "본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④ "정기평가"라 함은 "본평가" 이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최근 결산일(또는 만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연1회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말한다.

⑤ "수시평가"라 함은 "본평가" 이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내에 등급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말한다.

⑥ 미공시를 선택하는 경우 본약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신용등급은 공시되지 아니하며, 미공시등급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은 공시되지 않는다.

⑦ 미공시 신용평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본 약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을 경우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할 시점에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평가"로 "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① 공시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본평가일로부터 1년이다.
2. 채권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본평가일로부터 채권의 만기 또는 소멸(등급취소 포함)시까지이다. 이 때 채권의 만기는 투자자 모집 및 발행시점에 결정된 만기를 말한다.

② 사후평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공시 신용등급은 "일회성 의견"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후평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미공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후평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미공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공시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에 준한다.

제4조 (평가기간) "을"이 신용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본 약정 체결 후 "갑"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최종 접수일로부터 신용평가서의 최초 발송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단, 급격한 환경 변동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와 출장 또는 평가결과의 재심사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수수료) ① 채권별 약정 체결시 "갑"은 "을"에게 이 약정의 체결 또는 신용평가서의 수령과 동시에 앞면에서 정하는 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간단위 약정 체결시 "갑"은 "을"에게 앞면에서 정하는 평가수수료를 년 2회(6월, 12월) 분납하여 지급한다. 단, 연간단위 약정 체결시 평가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평가수수료는 본평가 후 등급의 사후관리에 따른 수수료이며, "갑"은 "을"에게 정기평가등급 확정 이후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용평가를 위한 출장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 제 비용을 평가수수료와는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제출의 의무 및 업무협조) ① "갑"은 본 약정체결 후 신용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2. 최근 반기(분기) 검토보고서 및 재무자료
3. 최근 월 금융거래현황(여수신현황, PF 우발채무 포함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내역, 유동성공여약정현황 등)

4. "갑"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와 "갑"이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은 업체 중 "을"이 지정하는 업체의 감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5. 기타 "을"이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한 '기초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② "을"은 제 ①항의 자료 이외에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 및 열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이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장조사, 경영진 또는 직원과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갑"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 업무장소 제공, 면담주선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갑"은 구두 또는 서면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 및 충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을"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자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갑"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간주한다. 또한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정기평가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제1항~제4항에 의한 정기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이 수시평가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7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갑"은 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며, 제출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료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출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확인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용정보 등의 조회) ① "을"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갑"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갑" 또는 "갑"의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서 정한 "을"의 행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평가결과의 통지 및 재심사) ① "을"은 "갑"에게 신용평가서를 발송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은 1회에 한하여 통지일의 익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 요청 사유와 필요한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원리금 연체,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또는 기업파산 신청 등 중요 신용사건 발생 또는 피평가대상의 연락두절의 경우 등에는 이의제기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등급감시대상 등재, 등급 유보 및 취소의 경우 등은 재심사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갑"은 평가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9조 (신용평가서의 사용제한)

① "갑"은 "을"이 발행한 신용평가서를 해당 신용평가서에 명기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갑"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동조 ①항에서 정한 소정의 평가용도와 제출처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채권의 발행내용, 발행예정액의 변경)

- ① 신용평가서가 발송된 후 채권의 발행내용, 발행예정액이 변경되는 경우 "갑"은 교부받은 신용평가서를 폐기하고, 변경내역에 대해 "을"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채권의 발행내용, 발행예정액의 변경 시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회사채의 발행예정액 변경에 따른 평가수수료 차액은 사후적으로 정산한다.

제11조 (등급공시 및 자료·보고서 등의 공개·공시) ① "을"은 "갑"에 대한 본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등 신용평가가 완료된 신용평가결과를 증권관련 전산망 등에 공시한다.

- ② 평가보고서, "갑"의 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업황·전망 및 이를 분석·가공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갑"의 핵심사 요청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의 거절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갑"이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어 "을"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1차에 한하여 "갑"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갑"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본평가 및 예비평가의 경우에는 본 약정에 의한 신용평가를 거절할 수 있다.
2.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등급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을"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본 약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서 정한 평가거절, 신용등급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본 약정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미발행 채권 신용등급의 취소) "을"은 기평가한 채권이 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미발행되거나, 이에 준하는 기타 사유 발생시 해당 신용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비밀사항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한국거래소 규정을 포함)에 의거 감독기관, 법원, 검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

- ② "갑"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을"의 신용등급 공시 이전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미공시 신용평가의 경우 "갑"은 등급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신용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약정의 해지 및 평가수수료의 반환) ①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 약정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출자료의 반환청구 금지) 본 약정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갑"은 신용평가를 위해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을"의 면책) ① "을"이 행하는 신용평가의 목적은 "갑"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의 정도 또는 평가대상의 전반적인 적기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특정 채무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인 채무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 유예 또는 지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신용평가결과에 관계 없이 "갑"이 배상하며, "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에서 정한 평가의 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갑"으로부터 수령한 평가수수료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 (약정의 보완)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르고, 관례가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정보의 이용) "을"은 "을"의 전반적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을"은 제공된 정보를 종합 또는 변환하여 "갑"과 연관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을"의 전반적인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종합되거나, 변환된 정보를 발행, 배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보장의 부인) 본 약정서와 채무증권 발행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신용등급 및 기타 의견 포함)는 "있는 그대로"의 조건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특히, "을"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정보 또는 의견의 정확성, 적시성, 충분성, 시장성 또는 특정 목적 부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장도 하지 않는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약정서와 그 이행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고 해석되어야 하며, 본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